

2022년 주요 판례 정리(2) - 상표 및 저작권

February 15, 2023

법무법인(유) 세종 IP그룹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법령과 주요 판결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종 IP그룹은 2022년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특허 상표 저작권법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업무상배임과 관련하여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고, 3회에 걸쳐 2022년 IP분야 주요 판결의 내용과 의의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을 담은 뉴스레터를 발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3. 2. 8. 발행한 첫 번째 뉴스레터**를 통해 아래 1.항 내지 3.항 기재 판결에 대해 소개해 드린 것에 뒤이어, 이번에는 4.항 내지 6.항 기재 판결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1.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지’ 및 ‘공연 실시’의 의미
-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후10732 판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후11268 판결
2.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후10923 판결
3. 원특허출원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에서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후11479 판결
4.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의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7두68837 판결
5. 판촉물의 제공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
6.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접근권한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침해 여부의 판단 방법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7. 타인의 성과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완제품 제조비용을 절감한 경우 비용 절감으로 인한 이익을 침해자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
8. 영업비밀을 담고 있는 유체물을 취득하는 것이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786 판결
9.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입수 가능한 회사의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

[상표]

4.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의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7두68837 판결

■ 판시 내용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이하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이라고 한다)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구 변리사법(2016. 1. 27. 법률 제13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변리사가 아닌 자는 위와 같은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구 변리사법 제21조).

한편 위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16. 7. 28. 이전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변리사 등록을 한 경우 변리사의 자격을 가지는데[구 변리사법 제3조 제2호, 변리사법 부칙(2016. 1. 27.) 제3조],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다른 법률에 정한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으므로(변호사법 제49조 제1항, 제2항),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그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의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본 판결의 해석

변리사법은 변리사가 아닌 자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21조). 이에 관하여 특허청은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법무법인은 변리사법이 정한 변리사가 아니라고 하여 특허, 상표에 관한 출원 등의 대리 업무는 물론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되는 심판사건 대리 업무도 수행할 수 없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본건에서는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이 있는 구성원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상표 등록 출원을 하였는데, 특허청장은 법무법인이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가 아니므로 출원서를 제출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다른 법률에 정한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변호사법 제49조 제1항, 제2항을 근거로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의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을 가진 구성원 소속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출원, 심판사건 대리 등의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4. 판촉물의 제공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

■ 판시 내용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이 사건 수건의 외관·품질 및 거래 현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수건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으로 상품에 해당하고, 위 수건 중 일부가 사은품 또는 판촉물로서 무상으로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상으로 제공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 상품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수건에 이 사건 상표를 표시하거나 이 사건 상표가 표시된 수건을 양도하는 행위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 본 판결의 해석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 아닌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에 상표를 표시하여 양도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하급심과 대법원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즉, 맥주 선전 광고를 위한 무료시음회를 개최하며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등을 무료로 배포 하였던 사안에서, 하급심 법원은 티셔츠 등은 그 자체가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인 상품이 아니라 상품인 맥주의 단순한 광고매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고(서울지방법원 1995. 10. 24.자 95카합 3529 결정, 서울고등법원 1995. 12. 30.자 95라202 결정), 잡지의 사은품에 상표를 표시하였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월간잡지의 사은품으로 제공된 책자는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거래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없어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물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은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

본 판결의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상표를 임의로 표시한 수건 1,000개를 주문 제작한 뒤 그 중 200개 상당을 판매하였는데, 이는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었고, 다시 해당 피고인은 1,000개 중 100개 상당을 다른 거래처에 사은품 내지 판촉용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다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표가 임의로 표시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수건 1,000개 중 290개 상당을 판촉용으로 다른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1심 법원은 200개 상당을 판매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100개 및 290개를 판촉용으로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이 ‘광고매체’ 내지 ‘판촉물’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항소심 법원도 이러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앞서 살핀 사실들 외에 피고인들이 주문 제작한 수건 1,000개는 일반 거래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유통되는 수건 제품과 외관이나 품질 등이 유사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위 수건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으로 상품에 해당하며, 그 일부가 사은품 또는 판촉물로서 무상으로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무상 제공된 부분만 분리하여 그 상품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종전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던 사은품 책자(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들의 사진을 모은 책자)는 해당 판결의 판시 내용에 따를 경우 그 자체로 교환가치를 가지고 거래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물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본 판결에서는 문제의 수건 중 일부가 유상으로 판매되었다는 사정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정은 해당 수건이 일반 거래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유통되는 수건 제품과 외관이나 품질 등이 유사하다는 대법원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설사 그 중 일부가 사은품이나 판촉물로서 무상으로 제공된 경우라 하더라도 무상 제공된 부분 역시 판매된 부분과 마찬가지로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는 점에 본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관련 규정이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임을 고려하면 본 판결에서와 같이 일부가 유상으로 판매되었다는 사정이 없더라도 무상으로 제공되는 사은품이나 판촉물이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렇다면 그러한 경우 ‘상품성’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더욱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접근권한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여부의 판단 방법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 판시 내용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정보통신망침해등) 관련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는 보호조치나 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바로예약 애플리케이션'(이하 '이 사건 앱'이라고 한다)과 통신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서버의 URL과 API 서버로 정보를 호출하는 명령구문들을 알아내어, 자체 개발한 원심 판시 '야놀자 크롤링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PI 서버에 명령구문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의 숙박업소 정보를 수집하였다.

위 API 서버의 URL이나 명령구문은 피해자 회사가 적극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라도 간단한 기술조작이나 통상 사용되는 소위 '패킷캡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정보이다. 일반 이용자들은 이 사건 앱을 통해 API 서버에 회원 가입 후 또는 회원 가입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앱이나 API 서버로의 접근을 막는 별도의 보호조치는 없었다.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앱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이용자는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앱 또는 API 서버로부터 취득한 정보의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일 뿐, 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위 이용약관에서 회원에 대하여 '자동접속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회사의 서버에 부하를 일으켜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약관 규정을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이용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렵고, 규정의 내용 또한 접근권한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위와 같은 약관상의 규정만으로 API 서버에 대한 접근권한이 객관적으로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저작권법 위반죄(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관련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허락 없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양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양적으로 상당한 부분인지 여부는 복제 등이 된 부분을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규모와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인지 여부는 복제 등이 된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소재 자체의 가치나 그 개별 소재의 생산에 들어간 투자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그 복제 등이 된 부분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 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앞서 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한 체계적 복제 등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상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복제 등으로 결국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을 한 것과 같은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관련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정보처리장치를 운영하는 본래의 목적과 상이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이고, ‘기타 방법’이란 컴퓨터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한편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

■ 본 판결의 해석

크롤링(crawling)이란 로봇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웹사이트에서 기계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특정 URL에 접근하여 HTML 코드상의 태그를 따라가며 웹페이지를 수집, 인덱싱하는 방법으로 수행됩니다. 오늘날 웹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정보나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방식은 보편화되었으므로 크롤링을 활용해 온라인상에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고 참조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투자가 요구되므로, 그러한 투자의 결과물을 경쟁업체가 대량으로 복제하여 활용하는 ‘무단편승’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크롤링 분쟁에는 통상 저작권법 제93조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타인의 상당한 노력이나 투자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라는 주장이 함께 제기됩니다. 최근에는 크롤링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의 정보통신망 침입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저작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의 청구원인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판결은 모바일 앱에서 API 서버에 정보를 호출하여 숙박업소에 관한 정보를 내려받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피해자 회사의 API 서버에 ‘패킷캡처’ 분석을 통해 만든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주기적으로 접근해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박업소 정보를 복제한 크롤링 행위의 형사책임 여부가 문제된 사안으로,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을 지지하면서 본 사안에서 문제된 크롤링 행위를 최종적으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본 판결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본 판결을 기초로 법원이 크롤링 행위 전반에 대해 관대한 태도로 전환하였다고 일반화하거나 형사 판결과 민사 판결 간의 본질적 차이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i) 웹사이트에의 접근이 아닌 백엔드(back-end)의 API 서버에의 접근이 문제가 되었는데 API 서버 접근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가 없었던 점, (ii) 크롤링을 통해 수집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50여개 항목 중 3 내지 8개로 양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던 점, (iii) 그 정보들이 대부분 이용자들에게 공개된 것이거나 쉽게 수집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질적 상당성 역시 인정하기 어려웠던 점, (iv) 약관상 크롤링 제한의 내용이 모호했고 피고인들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회원이 아니었다는 점 등의 사정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웹사이트에서 검색 등을 통해 제공되는 체계화된 정보들이 데이터베이스로 평가될 수 있고 크롤링된 정보의 분량이나 비율 혹은 크롤링의 빈도가 상당한 경우, 웹사이트에 크롤링 금지 문구가 있거나 약관에 명시적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유료로 제공되는 정보를 회원 ID를 이용해 기계적으로 수집하여 영리적으로 활용하였으나 그것이 약관에 위반되는 경우 등 전제되는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본 판결과 다른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본 판결의 판시 내용과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온라인 서비스 제공사업자들이 크롤링 분쟁에 대비하여 유의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웹사이트나 데이터베이스가 보관된 서버에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마련함으로써(예: 접속 허가 계정 관리, 암호화 등) 제3자의 크롤링 행위가 정보통신망 침입이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웹페이지에 크롤링 금지 경고문구를 기재하고, 이용약관에 크롤링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를 명확하게 기재한다면 크롤링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일부 크롤링 분쟁 사건에서는 크롤링된 웹사이트와 크롤링한 사업자의 웹사이트에서 공통의 오류나 특이한 표현방식이 광범위하게 발견된다는 점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혹은 반복적·체계적 복제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른바 ‘워터마크(watermark)’ 정보(자연적인/인위적인 오류 혹은 비일반적인 표현방식)를 데이터베이스 소재에 삽입해 두면 크롤링 행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다수의 하급심 판결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수작업’으로 정보를 수집 또는 분류하고 갱신·검증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등의 인적 투자를 한 것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를 인정하는 중요한 사정이 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인적 투입요소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 혹은 증빙자료를 많이 확보해 둔다면 크롤링 분쟁에서 권리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에 회원 ID를 이용해 접근하는 경우 해당 웹사이트의 이용약관에서 크롤링을 금지하는지 여부, 크롤링할 정보가 누구에게나 공개된 것으로서 쉽게 수집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유료회원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는 크롤링 행위에 따른 법적 판단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므로 이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IP그룹

- 임보경 | 변호사 T. 02-316-4041 E. bklim@shinkim.com
- 권이선 | 변호사 T. 02-316-4697 E. eskwon@shinkim.com
- 차효진 | 변호사 T. 02-316-1698 E. hjcha@shinkim.com
- 김충녕 | 변호사 T. 02-316-4092 E. cnykim@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
